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스타트업 모집공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기업-스타트업이 협력파트너 발굴 등 최적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성장을 도모
- (사업내용)** 대기업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연계하여 협업 지원
 - (민간) 프로그램별로 스타트업 모집·선정 후 추천
 - (정부) 프로그램별로 추천된 스타트업에게 후속 연계 지원
- (추천규모)** 프로그램별 3개사 이내로 추천(민간→정부)
- (지원내용)** 민·관 협력을 통해 최적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 (민간) 멘토링, 인프라, 판로, 투자 등을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 (정부) 추천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PoC) 자금, 기술개발(R&D) 및 정책자금(기술특례보증, 융자한도 우대) 연계를 후속으로 지원

2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개요

- **(참여현황)**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롯데벤처스, 삼성서울병원, 효성티앤에스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	모집분야	접수기간	접수처
①  True Innovation	• AI, IoT, SmartFactory, Cloud, MEC 등 5G 분야, 기타	'22.5.18.~6.30	http://www.true-inno.com/startup
②  Tech Open Collaboration	• 친환경 자재, 탄소저감 시스템, 신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환경 모니터링, 기타(충간소음, 스마트 그린빌딩 등)	'22.5.18.~6.14	https://www.skecoplant.com/ 혹은 https://innobranch.com
③  미래식단	• Future Food(현 식음료 대체 미래 식음료), 패키징, 대체 식음료, Medi Food(특정 타겟 맞춤 기능성 식품)	'22.5.18.~6.10	https://ws.pocketsurvey.co.kr/survey1/ifZujTM
④  딥세이버 프로그램	• AI분야 - 환자 상태를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하는 SW시스템 구축(삼성서울병원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UX 개발)	'22.5.18.~6.18	http://digitalhealthack.org
⑤  효성×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 리테일 무인화 솔루션, 블록체인 신사업, 메타버스 신사업	'22.5.18.~6.24	https://innobranch.com/

*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별첨2.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소개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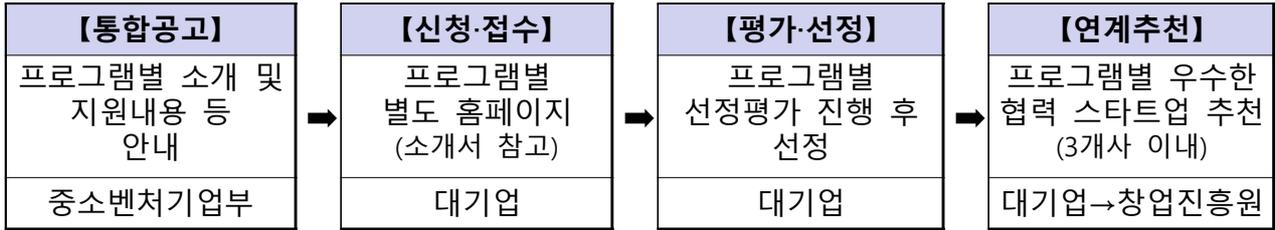
- **(추진절차)** 프로그램별로 스타트업 모집 신청·접수 후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우수한 협력 스타트업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추천

*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공모내용, 평가방식,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프로그램 소개서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① **(신청·접수)** 스타트업이 프로그램별 소개서를 참고해 참가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② **(평가선정)** 프로그램별 선정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 후 스타트업을 선정

- ③ **(연계추천)** 프로그램별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 중 우수한 협력 스타트업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3개사 이내로 추천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주요 추진 절차 >



3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후속 연계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별로 선정되어 추천받은 스타트업 중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한 스타트업

○ **지원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5.5.18.~'22.5.17.)**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지원자격 확인 ([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예비창업자 (단, 연계추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향후 부적격 확인 시, 지원자격 및 지원 제외)**

- 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추천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⑧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PoC) 자금, 기술개발(R&D) 및 정책자금(기술특례보증 등) 연계를 후속으로 지원

① **(상장 수여)** 프로그램별 지원기업 중 1개사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여

② **(사업화 자금)** 대기업과 신규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을 차등으로 지원 (최대 1억원)

③ **(기술개발 등)**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최대 3억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원), 중소벤처진흥공단 융자한도 우대(최대 100억원) 등 지원

< 후속 연계 지원 세부내용 >

구분	지원금액	세부 지원 내용	비고
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별도 안내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창업진흥원
② R&D	최대 3억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연계 * 전략형(최대 2년 3억원), 디딤돌(최대 1년 1.5억원) * 요건,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③ 기술보증	최대 20억원	· 기술특례보증 연계 * 보증비율 85% → 90~100% *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 * 수요기업과 실제 협업(계약 등) 추진 시 지원	기술보증기금
④ 융자	최대 100억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포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잔액) 우대 * (일반) 60억원 → (대스타) 최대 1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R&D 및 기술보증, 융자 연계는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연계지원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프로그램별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접수

기업명	프로그램명	신청기간
SK텔레콤	True Innovation	'22.5.18. ~ 6.30.
SK에코플랜트	Tech Open Collaboration	'22.5.18. ~ 6.14.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22.5.18. ~ 6.10.
삼성서울병원	딥세이버 프로그램	'22.5.18. ~ 6.18.
효성티앤에스	효성×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22.5.18. ~ 6.24.

(신청방법) 프로그램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업명	프로그램명	접수처
SK텔레콤	True Innovation	www.true-inno.com/startup
SK에코플랜트	Tech Open Collaboration	https://www.skecoplant.com/ 혹은 https://innobranch.com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https://ws.pocketsurvey.co.kr/survey1/ifZujTM
삼성서울병원	딥세이버 프로그램	https://www.digitalhealthhack.org/ai-1
효성티앤에스	효성×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https://innobranch.com/

□ **(제출서류)** 프로그램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기업명	프로그램명	제출서류
SK텔레콤	True Innovation	창업배경 및 서비스, 팀구성 등에 대해 제안접수(웹사이트)에서 작성 * 기타자료 자유제출(IR자료, 서비스 소개자료 등)
SK에코플랜트	Tech Open Collaboration	자유양식 PDF(또는 ppt) 파일형식 * 제안기술 요약설명 및 기대효과 필수포함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자유양식 PDF(또는 ppt) 파일형식
삼성서울병원	딥세이버 프로그램	자유양식 PDF(또는 ppt) 파일형식
효성티앤에스	효성×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자유양식 PDF(또는 ppt) 파일형식

* 프로그램별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첨2.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소개서** 참고

5

유의사항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 참여하고자 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해당 프로그램 공고문 내용을 따름
- 평가 참여 수행자는 각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별 기준에 따름
- 수상한 결과물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대회 참가 중 습득한 대기업의 경영상의 비밀 등 정보 일체는 대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본 모집공고 상 사업화 자금 지원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협약 관련 제출서류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발견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 부처 및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지원 협약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취소 처리
- 프로그램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 예시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등 다수의 창업경진대회 결선 진출 시 택일하여 참여
- 다수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서 연계추천을 받더라도 후속 연계지원 사항 중복선정 불가
-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타 모집 분야 공고 중복선정 불가
- 협약 체결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추천된 스타트업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취소 및 사업화자금 지원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R&D, 정책자금 연계 지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 여부가 결정됨

6

문의처

□ 프로그램 문의

기업명	프로그램명	문의처
SK텔레콤	True Innovation	▪ (일반 문의) 02-6250-8124
SK에코플랜트	Tech Open Collaboration	▪ (일반 문의) 02-6000-5351 ▪ (기술분야 담당자) 02-3499-2970 02-3771-5395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 (기술분야 담당자) 02-2051-1521
삼성서울병원	딥세이버 프로그램	▪ (일반 문의) * digitalhealthhack@gmail.com
효성티앤에스	효성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 (일반 문의) 02-6000-5171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후속 연계 지원 문의

- 창업진흥원(044-410-1716, 1717, 1718)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0.8.)
<p>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p>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p>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참고**프로그램별 평가 기준[안]****① SK 텔레콤 True Innovation**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 정의와 해결방안	- 시장 내 문제점과 제시하는 해결책의 실행가능성 및 차별점
팀 경쟁력	-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내부 역량 보유 여부
개발완성도 및 핵심지표	- 개발 진행사항과 계획, 서비스의 주요 지표(KPI)
프로그램 적합도	- 사업연계 가능성 및 스타트업 프로그램 제공의 적합성

② SK 에코플랜트 Tech Open Collaboration

평가항목	세부내용
공동 기술개발 가능성	- 제안기술 고려시 공동기술개발이 가능 유무 등
적용가능성	- 공동기술개발 완료 후 PJT 적용 또는 사업에 적용 가능 유무 등
사업성	- 제안기술 적용 시 경제적 가치 창출 우수성 등
기술 우수성	- 제안기술의 차별성, 혁신성 등

③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 정의와 해결 역량	- 시장내 문제 상황과 회사가 제시하는 해결방법의 적합도
팀 경쟁력	- 핵심 기술 보유 상황과 핵심인재의 경험 또는 준비도
제품성/시장성	- 고객정의/ 시장규모/ 경쟁력/ BM(수익성)/ 확장성
푸드 밸류체인 혁신성	- 식자재 유통부터 소비까지의 밸류체인 혁신 요소
프로그램 적합도	- 투자 및 계열사 공동연구에 적합도

④ 삼성서울병원 디지털 헬스 해커톤 - 딥세이버 프로그램

평가항목	세부내용
설명력	- 모델의 최종 판단 결과와 관련된 근거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설명의 충실도
정확도	- 모델의 최종 판단 성능
편의성	- 의료진 사용 편의성. 병원정보시스템 통합 가능성 및 UX 편의성 등
유용성	- 환자의 다양한 임상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ex. 심정지 예측, 중환자실 전실, 원내 감염, 패혈증 등) * 단일 혹은 복합 주제 선택 가능

⑤ 효성 × 한국무역협회(KITA) 오픈이노베이션

평가항목	세부내용
사업성	- 사업 모델의 실현성 및 수익성, 향후 성장 가능성
혁신성	- 사업 아이디어/핵심 기술의 독창성, 경쟁사 대비 우수성
자사 연관성	- 자사 전략/역량과의 부합 여부, 신성장 동력 잠재력 여부
회사 역량	- 대표자 역량, 관련 전문성 보유 여부, 기존 사업 실적